

[서식 예] 내용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등 요청

내용증명

발 신 인 O O O 주 소

수 신 인 O O O 주 소

- 1. 본인은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로서, 귀하는 ◈◆◈에 대하여 20,000,000원 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 2. 본인은 ○○지방법원 20○○타채○○호로 ◈◆◈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8.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3. 본인은 추심명령에 따라 귀하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직접 지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2018. △. △.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본인으로서는 부득이 추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O O . O . O . 이 . 의 발신인 O O O



내 용 증 명	·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추심금 청구로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제3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복잡한 소송 과정으로 나아감 없이 신속하게 본인의 채권 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